

중국조선족가을놀이

일본에는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 놀이가 많습니다.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불꽃놀이, 가을이면 단풍구경, 겨울이면 스키여행, . . .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임에 참가한 적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임속에서 즐거움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그리운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들, 심금을 울리는 노래소리, 정다운 고향이야기,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 . .

이번달 20일 (일요일) 에 동경에있는 조선족들의 가을놀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중국조선족출신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냅시다.

「日程」

時間：1998年9月20日 (日曜日) 10:00～16:00

場所：千葉葛西臨海公園第一駐車場 (駅前すぐ右側) 西側グラウンド

交通：JR京葉線、自動車も可 (構内に有料駐車場あり)

内容：10:00	集合
10:00～12:00	自由
12:00～12:30	宝探し
12:30～14:00	昼食
14:00～16:00	娯楽
16:00	終了

備考：①食べ物、飲み物は持参する。(自帶)

公園構内に飲み物 (ビール含む) 売り場あり、ただ値段が少々高い。

②娯楽道具とアイデア

③当日雨の日は自動中止

連絡：尹昌洙：010-552-1706 黄正浩：010-836-4394

金丙哲：080-342-7105

天池クラブ事務局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 법무부 '재외동포 특례법'

내년 7월부터 5백20만 해외동포들은 부동산 금융거래 등 국내경제활동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비자없이 국내에 들어와 장기체류할 수 있고 취업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해외동포(재외국민+한국계외국인)들은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비실명부동산을 보유중인 해외동포들은 법시행후 1년 이내에 실명전환하면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이용면에서도 해외동포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재외국민은 국내 부동산매각 대금을 한국계외국인(외국국적한국인)처럼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반출이 허용된다.

또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외환을 들여온 후 가져나갈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돼 국내체류 6개월까지 들여온 액수만큼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미화 1만달러이상 반출할 때 반출시기가 국내체류 3개월을 초과하면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례법은 이와함께 해외동포들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비자없이 외교 국방 수사 재판관계공직을 제외한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은 이밖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0일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도 국적상실과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해진다.

한편 주요국가별 재외동포수는 중국 1백96만명, 미국 1백85만명, 일본 66만명, 유럽 45만명, 캐나다 9만명, 중남미 9만명 등이다.

[재외동포 등록절차]
재외동포등록서 제출/국내거주자 신고 - 출입국 관리사무소장(국내)
재외공관장(국외) - 법무부장관 심사 - 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한국경제 8/26]

Copyright 1995~1998 중국신문 All right reserved.

중 국 신 문 : <http://woojoo.co.kr>
E-mail : woojoo@woojoo.co.kr

[E메일 통신]중국국적 동포도 특례대상 되나

Q 중국 베이징의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입니다. 지난달 26일자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 (조선족) 들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가 마련한 특례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외국국적의 취득여부에 따라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 등 두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교포로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나 영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한국계 외국인은 혈통적으로 한국인의 자손이지만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족 동포들은 대부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 한국계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례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내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선족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할 경우 소정의 등 록절차를 밟으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이 따랐던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토지 취득을 비롯한 부동산거래 등이 자유롭게 돼 경제활동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재판, 국방분야 등 특수분야를 제외하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중국동포들도 특례법이 시행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진행중인데 외교통상부가 국제법 원칙과 외교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중앙일보 9/2]

Copyright 1995~1998 중국신문 All right reserved.

중 국 신 문 : <http://woioo.co.kr>

E-mail : woioo@woioo.co.kr

天池通信

62 제 4 1 차天池俱樂部정례모임開催

지난 1998년 8월 30日文京區區役所 4층회의실에서 天池俱樂部 제 4 1 차정례모임이 있었습니다. 30여명의 조선족분이 참가하였습니다. 사전에 정한 테마대로 지금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있는 중국, 한국, 조선의 정세에 대해 여러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도문지역에 많은 조선의 피난민이 도피해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의 이사회의 선거를 앞두고 천지구락부의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에 대해 여러가지로 긍정, 부정, 조언들을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9월 5일 김병철등 10여분의회원들이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연극을 구경하였습니다.

63 제 4 2 차天池俱樂部정례모임

작년 10월천지구락부의 새이사회가 출발한지 어언간 1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락부의 이사들의 노력과 여러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비록 기대에는 많이 못미치지마는 그러나 우리들의 일본에서의 입지와 출발당시를 생각해 볼때 큰 진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구락부의 회칙에 따라 이번모임에는 새이사회 성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천지구락부는 우리 모두의 구락부입니다. 천지구락부는 어느 특정사람들의 구락부가 아닙니다. 천지구락부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분, 의욕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유능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時間 : 1998年9月27日 午後 6:30 ~ 9:20

場所 : 文京區區役所ビル 3階 會議室C